

『음악논단』 연구윤리 규정

개정일: 2017년 5월 16일

제1장 목적

본 규정은 학술지 『음악논단』의 논문게재와 관련하여 연구자 및 심사자, 편집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준수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장 연구자 의무

제1조 연구자는 학술적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2조 연구자는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게재한 논문을 중복 게재할 수 없다.

제3조 연구자는 타인의 저작물 내용을 표절하지 않아야 한다.

제3장 연구자에 대한 윤리규정

제1조 표절

이미 발표된 타인의 연구에서 전부, 혹은 일부를 출처의 명시 없이 그대로, 혹은 다른 형태로 변화시켜 사용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타 연구자의 연구 결과를 인용, 참조할 경우 그 출처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는 사용 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제2조 중복게재 및 이중출판

연구자는 국내외에서 게재 예정에 있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을 포함하여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업적물을 이중출판, 이중투고하지 않는다. 논문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들을 모아서 저서로 출간하는 경우는 이중 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이 경우에도 이미 발표된 결과들을 명확히 인용하여야 한다.

제3조 인용 및 참고 표시

- 1)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 정확하게 기술하고,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인적 접촉을 통해 입수한 자료의 경우에도 반드시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얻은 후에 인용한다.
- 2) 타인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 참고할 경우 반드시 각주를 통해 인용 및 차용,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한다. 또한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느 부분이 선행 연구의 결과이고, 어느 부분이 연구자의 독창적인 생각, 주장, 해석인지를 독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조 논문 수정

연구자는 논문의 심사 및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야 한다. 만약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기술하여 편집위원회에 전달하여야 한다.

제4장 편집위원(회)에 대한 윤리 규정

제1조 편집위원(회)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연구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은 연구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뿐 아니라, 그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 친분과 상관없이 오직 논문의 학술적 질과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투고된 논문을 취급하여야 한다.

제3조 편집위원(회)은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논문의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동일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 해당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편집위원회가 최종결정할 수 있다.

제4조 편집위원은 논문의 게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심사자 이외의 타인에게 연구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제5장 심사위원에 대한 윤리규정

제1조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으로부터 심사 의뢰받은 논문을 정해진 심사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여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단, 논문의 내용을 평가

하기에 자신이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즉시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2조 심사위원은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연구자와의 사적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거해 공정하게 논문을 평가하여야 한다. 논문을 탈락시킬 때에는 반드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제3조 심사위원은 논문의 게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편집위원(회) 이외의 타인에게 연구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논문에 대해 타 연구자와 논의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는다. 또한 논문이 출판되기 전에 연구자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도 안 된다.

제4조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연구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연구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가야 한다.

제6장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지침

제1조 연구윤리 위반이 제기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윤리위원회의 임무를 맡아 위반 혐의에 대해 제보자, 저자, 참고인, 증거자료 등을 통해 폭넓고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해야 한다.

제2조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는 연구자는 편집위원회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제3조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는 연구자는 편집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해야 한다.

제4조 편집위원(회)은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최종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연구자에 대한 신원 및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제5조 조사결과 연구윤리 위반이 확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징계를 취한다.

- 1) 연구윤리를 위반한 연구자의 논문은 학술지 게재를 불허한다. 이미 게재된 논문의 경우에는 학술지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편집위원회는 이 사실을 연구자에게 공지한다.

- 2)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의 연구자는 이후 3년간 『음악논단』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제7장 심사윤리 위반에 대한 지침

제1조 심사위원이 제4장 제2조나 제3조를 위반할 경우 편집위원회(윤리위원회)는 그 위반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사를 해야 한다.

제2조 심사윤리 위반 혐의를 받는 심사자는 편집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제3조 제1조의 위반여부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연구소 소장과 편집위원회가 결정한다.

제4조 심사윤리 위반이 확정될 경우 해당 심사위원은 이후 3년간 『음악논단』의 논문 심사를 할 수 없다.

제8장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부 칙

본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음악논단』 투고규정

개정일: 2025년 3월 27일

- 본 학술지는 매년 2회(4월 30일, 10월 31일) 발행한다.
- 게재신청 마감은 원고 제출 마감의 한 달 전, 심사완료는 발행일 한 달 전이다.
- 투고를 하는 논문 저자는 아래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원고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I. 기본체제

1. 『음악논단』의 원고로 학술 논문 및 서평을 투고할 수 있다. 서평의 경우 위촉 혹은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학술 논문의 주제는 음악학의 제분야(음악사, 음악이론, 음악인류학, 음악철학, 음악미학, 음악심리학, 음악사회학 및 관련 융합 연구)로 한정하며, 서평은 음악학 관련 도서(외국어 및 한국어)로 한정한다. 단 심사할 수 없는 특수한 민족지적 연구의 경우 심의를 거부할 수 있다.
2. 학술 논문이나 서평의 원고는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한글(.hwp) 파일로 제출해야 한다.
3. 학술 논문의 원고는 제목, 저자명, 본문, 검색어, 참고문헌, 국문초록, 영문초록의 순서로 정렬하며, 서평은 제목, 서평자, 책 제목(저자)의 순서로 정렬한다.
4. ‘저자의 소속과 지위’에는 대학 교원의 경우 소속 대학과 ‘교수 직위’, ‘강사’, ‘연구원’, ‘학생’ 등의 정보를 기입하고, 초·중등학교 교사 혹은 학생의 경우 소속 학교와 ‘교사’ 혹은 ‘학생’ 등의 정보를 기입하고,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기입한다.
5. 학술 논문 원고의 경우 국문초록, 영문초록을 반드시 포함한다(II-4. 초록 참조).
6. 원고의 악보, 도표, 그림은 출판 가능한 상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7. 학술 논문의 원고는 국문초록, 영문초록,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A4 25매 이내로 작성되어야 하며, 서평 원고는 A4 10매 내외로 작성되어야 한다.

II. 논문 작성요령

1. 본문

- (1) 본문의 구성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할 수 있고, 서론은 “들어가며” 혹은 “들어가는 글”로, 결론은 “나가면서” 혹은 “나가는 글” 등의 제목으로 표시할 수 있다.
- (2) 본문 내 단락들은 행 띄기를 하지 않으며, 들여쓰기를 통해 구분한다.
- (3) 필요한 한자 및 외래어는 () 안에 기재한다. 외래어는 모두 소문자로 쓰되, 인명의 첫 철자는 대문자로 쓴다.

예) 악학궤범(樂學軌範), 으뜸화음(tonic), 슈베르트(Franz Schubert)

- (4) 인명은 한글로 표기하고, 처음 나올 때는 () 안에 원명과 생몰연도를 기재한다. 반복해서 나올 때는 외국인인 성(姓)만을 쓰되,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이름도 함께 쓴다.

예)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Johann Sebastian Bach, 1685-1750), 바흐는

- (5) 국내 도서, 한글번역본 또는 한자로 된 책이름은 『』 안에 표기하고, 필요한 경우 원제를 () 안에 적는다. 이 때, 괄호는 『』 밖에 둔다. 외국도서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예) 『음악논단』, 『그로브 음악사전』(*Grove's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 (6) 논문명은 “ ” 안에, 작품명은 ≪ ≫ 안에 한글로 표기하고 원제를 () 안에 적는다. 작품 안의 소재명은 ‘ ’ 안에 적는다.

예) ≪겨울 나그네≫(*Winterreise*) 중에서 ‘우편마차’(Die Post)

≪환호하라 기뻐하라≫(*Exsultate Jubilate*, K. 165)

- (7) 따옴표는 특정한 단어, 구, 문장을 직접 인용하거나 강조할 때나 작품의 소재목을 표시할 때 쓴다. 큰 따옴표는 문장이나 구를, 작은 따옴표는 구나 단어에 붙일 수 있되, 논문 저자의 기준에 따라 따옴표를 일관성 있게 사용해야 한다.
- (8) 인용문은, 3행 이내일 경우, “ ” 안에 적고, 3행을 초과할 경우, 별행에 적는다. 이때 인용문의 위·아래를 각 1행씩 띄고, 좌우에 여백을 두며, 본문보다 한 폰트 작은 글자로 쓰되, 줄 간격은 그대로 둔다.
- (9) 문장의 끝에 부연 설명이 포함된 괄호를 붙일 경우, 괄호 밖에 마침표를 붙인다. 그러나 부연 설명이 완전한 문장일 경우, 괄호 앞 문장, 괄호 안 문장의 끝에 모두 마침표를 붙인다.

예) ...다(필자 강조).

...다. (이것이 바흐의 의도였다고 볼 수 있다.)

- (10) 외국어에서 사용되는 콜론(:), 세미콜론(;)은 문맥에 맞게 마침표나 쉼표로 바꾸어 사용한다. 인용문의 경우도 동일하다.
- (11) 문장 중간에 하이픈(-)을 사용해 부연설명을 하지 않는다. 삽입구나 문장은 괄호를 붙여 본 문장의 끝에 붙일 수 있다. 괄호의 처리 방법은 9번 조항을 따른다.

2. 각주

- (1) 각주는 본문에서 인용하거나 원용하는 자료의 출처를 밝히고자 할 때나 본문의 특정 내용과 관련해 참고할 내용을 추가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 (2) 각주 번호는 관련된 본문 문장 끝의 마침표 다음에 붙인다. 그러나 특정 단어나 인명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단어 다음에 붙일 수 있다.
- (3) 각주에서 서지정보를 표시할 경우, 저자, 제목, 출판지, 출판사, 출판년도, 쪽수 등의 순서로 표시한다. 이 때, 외국인 저자는 이름, 성(姓) 순으로 쓴다. 단행본과 악보의 경우, 출판지, 출판사, 출판년도는 괄호로 묶는다. 저자와 저서명 또는 논문명 등을 나열할 때, 쉼표(,)로 구분한다. 서지정보 표기법은 자료의 형태에 따라 다른데, 저자는 본 학술지가 정하는 편집체제를 따라야 한다.

1) 단행본

이남재, 김용환, 『서양음악사 18세기 음악』 (서울: 음악세계, 2006), 246.
 Christoph Wolff, *Johann Sebastian Bach: The Learned Musician* (New York: W. W. Norton, 2001), 32-35.

2) 번역된 단행본

Adele Katz, 『음악분석연구』(*Challenge to Musical Tradition: A New Concept of Tonality*), 서우석·김은혜 공역 (서울: 수문당, 1982), 4.

3) 단행본으로 출간된 논문집에 수록된 장(章) 형태의 논문

신현준, “소리미디어의 사회문화사,” 『한국의 미디어 사회문화사』, 유선영/박용규/이상길 외 (서울: 한국언론재단, 2007), 387.

Joel Lester, “Rameau and Eighteenth-Century Music Theory,” in

The Cambridge History of Western Music Theory, ed. Thomas Christense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753-754.

4) 정기적으로 간행되는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

김문자, “서양음악사 용어의 한글화 현황 분석연구,” 『음악논단』 7 (1993), 69.
Kofi V. Agawu, “Concepts of Closure and Chopin’s Op. 28,” *Music Theory Spectrum* 9 (1987), 3-4.

5) 학위논문

이미진, “현대음악의 리듬 특성을 반영한 분석모형,”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5.

Hyekyung Park, “Theoretical Approaches to Deconstruction in Music: Music as a Language, Signature, Yin-Yang, and the Function of Motive,” (Ph.D. Diss.,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2012), 9.

6) 세미나, 학술대회, 학술발표회에 기고된 출판물

정혜경, “리게티(Ligeti) 피아노 연습곡에서 나타나는 리듬적인 특징-연습곡 제1권의 1번 ‘Desordre’를 중심으로,” 『제2회 음악예술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연주의 사유(思惟): 문헌과 음악어법』, 2000. 음악예술학회, 6.

7) 사전

Joseph Kerman and others, “Beethoven, Ludwig van,” in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vol. 3, second edition, ed. Stanley Sadie (New York: Grove’s Dictionaries Inc, 2001), 97.

The Harvard Dictionary of Music, fourth edition, ed. Don Randel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3), s.v. “Figured bass,” 312.

『음악대사전』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9), “바이올린,” 627.

(주의) 각 항목의 저자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저자를 먼저 쓰고, 그렇지 않은 경우, 사전 이름을 먼저 쓴다. s.v.는 sub verbo(~의 항목)의 약자이다.

8) 신문

허소민, “The Pianissimo 2012 여덟손의 향연 2,” 『음악교육신문』, 2012년 8월 15일.

9) 잡지

윤석진, “피아노 앙상블 연주와 연구를 견실하게 수행해온 The Pianissimo,” 『International Piano』, 서울: (주)마스트미디어, 2011년 6월호, 22.

10) 악보

Johann Sebastian Bach, 『Toccaten: 토카타集』, 악보편찬위원회 편집 (서울: 음악춘추사, 1987), 62-63.

11) 음반

Johann Sebastian Bach, *The Brandenburg Concertos*, Paillard Chamber Orchestra, RCA CRL2-5801 (1975).

12) 인터넷 자료

<https://www.youtube.com/watch?nr=1&v=XAXmooYLUrU&feature=endscreen> [2014년 5월18일 접속].

David L. Code, “Listening for Schubert’s ‘Doppelgangers’,” *Music Theory Online* 1/4 (1995), <http://www.mtosmt.org/issues/mto.95.1.4/mto.95.1.4.code.html> [2015년 10월 18일 접속].

Nicholas Temperley, “Overture,” in *Grove Music Online*, <http://www.oxfordmusiconline.com/> [2015년 9월 24일 접속].

- (4) 앞에 언급한 문헌을 각주에서 반복할 경우에는 저자, 저서명, 쪽수만 기재한다. 저자가 외국인의 경우, 저자 란에 성(姓)만 쓴다.

예) 이여진, 『창작과 분석』, 10-15.

Strunk, *Source Readings in Music History*, 311-312.

- (5) 저자가 3인인 경우, 첫 번째 저자명 뒤에 ‘,’를 삽입하고, 두 번째 저자명 뒤에 ‘and’를 삽입한다. 3인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주에서는 저자명을 모두 쓰지 않고, 대표 3인 저자명 다음에 “외”, 영문 자료일 경우에는 others 혹은 et al.를 붙인다.

3. 참고문헌

- (1) 참고문헌은 저자, 저서명/논문명, 출판지, 출판사, 출판년도, 그 외의 출판정보를 순서대로 기재한다. 각주와 달리, (대표) 외국인 저자는 성(姓), 이름순으로 쓴다. 출판지, 출판사, 출판년도를 괄호로 묶지 않는다. 또한, 저자와 저서명 또는 논문명 등을 나열할 때, 온점(.)으로 구분한다. 번역서의 경우 저자는 원어로, 저서명은 한글로 표기한 후 () 안에 원어를 적는다. 역자는 저서명 뒤에 표기한다.
- (2) 참고문헌의 경우 저자와 저서명 또는 논문명 등을 나열할 때, 온점(.)으로 구분한다.
- (3) 나열 순서는 한글문헌, 외국문헌의 순으로 한다. 한글문헌 안에서는 저자가 한국인일 경우 가나다순으로, 외국인일 경우 알파벳순으로, 동일인일 경우는 출판연도순으로 쓴다.
- (4) 참고문헌에서 외국어 문헌의 경우, 역자, 편집자 정보 순으로 기재하고 이를 알리는 Edited by나 Translated by 등의 용어는 줄이지 않고 모두 쓴다.
- (5) 참고문헌에는 본문과 각주에서 다룬 문헌만을 쓴다.
- (6) 참고문헌에는 재판, 개정판, 증보판 등에 관한 정보를 쓸 수 있다.

1) 단행본

이남재, 김용환. 『서양음악사 18세기 음악』. 서울: 음악세계, 2006.
 Wolff, Christoph. *Johann Sebastian Bach: The Learned Musician*.
 New York: W. W. Norton, 2001.

2) 번역된 단행본

Katz, Adele. 『음악분석연구』(*Challenge to Musical Tradition: A New Concept of Tonality*). 서우석·김은혜 공역. 서울: 수문당, 1982.

3) 단행본으로 출간된 논문집에 수록된 장(章) 형태의 논문

신현준. “소리미디어의 사회문화사.” 『한국의 미디어 사회문화사』. 유선영/박용규/이상길 외, 381-436. 서울: 한국언론재단, 2007.

Lester, Joel. “Rameau and Eighteenth-Century Music Theory.” In *The Cambridge History of Western Music Theory*. Edited by Thomas Christensen, 753-777.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4) 정기적으로 간행되는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

김문자. “서양음악사 용어의 한글화 현황 분석연구.” 『음악논단』 7 (1993): 48-71.

Agawu, Kofi V. “Concepts of Closure and Chopin’s Op. 28.” *Music Theory Spectrum* 9 (1987): 3-4.

5) 학위논문

이미진. “현대음악의 리듬 특성을 반영한 분석모형.”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6.

Park, Hyekyung. “Theoretical Approaches to Deconstruction in Music: Music as a Language, Signature, Yin-Yang, and the Function of Motive.” Ph.D. Dissertation,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2012.

6) 세미나, 학술대회, 학술발표회에 기고된 출판물

정혜경. “리게티(Ligeti) 피아노 연습곡에서 나타나는 리듬적인 특징-연습곡 제1권의 1번 ‘Desordre’를 중심으로.” 『제2회 음악예술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연주의 사유(思惟): 문헌과 음악어법』. 음악예술학회, 2000.

7) 사전

Kerman, Joseph, Alan Tyson, Scott Burnham, Douglas Johnson and William Drabkin. “Beethoven, Ludwig van.” In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Vol. 3. Edited by Stanley Sadie, 73-140. Second Edition. New York: Grove’s Dictionaries Inc. 2001.

The Harvard Dictionary of Music. Edited by Don Randel. Fourth Edi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3.

『음악대사전』.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96.

8) 신문

허소민. “The Pianissimo 2012 여덟 손의 향연 2.” 『음악교육신문』, 2012년 8월 15일.

9) 잡지

윤석진. “피아노 앙상블 연주와 연구를 견실하게 수행해온 The Pianissimo.” 『International Piano』. 서울: (주)마스트미디어, 2011년 6월호.

10) 악보

Bach, Johann Sebastian. 『Toccaten: 토카타集』. 악보편찬위원회 편집. 서울: 음악춘추사, 1987.

11) 음반

Bach, Johann Sebastian. *The Brandenburg Concertos*. Paillard Chamber Orchestra. RCA CRL2-5801, 1975.

12) 인터넷 자료

<https://www.youtube.com/watch?nr=1&v=XAXmooYLUrU&feature=endscreen> [2014년 5월18일 접속].

Code, David L. “Listening for Schubert’s ‘Doppelgangers’.” *Music Theory Online* 1/4 (1995),

<http://www.mtosmt.org/issues/mto.95.1.4/mto.95.1.4.code.html> [2015년 10월 18일 접속].

Temperley, Nicholas. “Overture.” In *Grove Music Online*, <http://www.oxfordmusiconline.com/> [2015년 9월 24일 접속].

4. 초록

- (1) 국문초록, 영문초록은 논문의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10줄 내외(국문 500자, 영문 250단어 가량)로 한다.
- (2) 초록은 논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포함 할 만큼 포괄적이어야 하며, 연구의 배경보다는 내용의 핵심을 전달하여야 한다.
- (3) 중요한 인명, 장소, 기관의 이름은 약기하지 말고 모두 기재하며 원어를 병기한다.
- (4) 구어체나 비형식적 단어를 사용하지 말고 완전한 문장으로 쓴다.

Ⅲ. 기타 사항

1. 저자가 원하는 경우 인터넷 음원을 QR 코드로 본문에 첨부할 수 있다.
2. 논문 제출 시 연구윤리 강화를 위하여 표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KCI 문헌유사도 검사 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Ⅳ. 심사규정

1. 심사는 최소 3인 이상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이루어진다.
2. 심사 결과는 3인의 심사위원 점수의 평균을 산정하여
우수함 (80점 이상~100점) - 게재
보통 (70점 이상~80점 미만) - 수정 후 재심
부족 (70점 미만) - 게재 불가
로 판정한다.
3. 평균 70점 이상에 해당하는 논문 중 ‘게재 불가’가 포함된 경우, 편집위원회가 토의 후 ‘수정 후 재심’ 혹은 ‘게재 불가’로 최종 결정한다.
4. 심사 내용은 심사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투고자 본인에게 모두 공개한다.
5.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저자는 수정 사항이 정리된 ‘수정 조건표’(별지)를 제출해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게재 여부를 토의하여 결정한다.
6.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판정을 통보 받은 후 일주일 안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에서는 이에 성실히 답변할 의무가 있다.
7. ‘이의 신청’ 내용이 편집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판정될 경우 다시 심사 절차를 거칠 수 있다.

Ⅴ. 논문저작재산권 규정

1. 저자(들)는 최종 게재 판정 논문이 음악논단에 게재될 경우, 논문의 저작재산권 행사에 관한 일체의 권리 및 저작권을 한양대학교 음악연구소에 이양한다.
2. 본 학회지의 발행인은 저자(들)나 본 학회지의 발행인의 허락 없이 타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배타적인 권리가 있다.
3.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